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10708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은행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8. 13. 선고 2015가단77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25,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원고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에서 'C'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25,425,51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착오로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E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E은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 송금 사실을 알고 2014. 10. 22. 원고에게 액면 25,425,51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증서 2014년 제 ○○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4.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 ○○○○호로 청구금액을 25,625,510원(= 위 약속어음채권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 송금으로 형식상 이득을 취한 E과 사이에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625,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송금한 25,425,510원 부분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1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2004. 5. 18. 피고와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대출(한도)금액이 5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으로 최종변경됨), 위 대출약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2조 지연배상금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조 기업통장대출금 및 당좌대출금 지급방법 등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기업통장대출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

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E은 이 사건 계좌를 기업통장대출기본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25,425,510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E의 대출금은 96,765,658원이어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96,765,658원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위 대출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더라도 이에 관한 예금계약이 성립함이 없이 바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25,425,510원을 송금할 당시 E의 대출금 잔액이 이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25,425,510원 부분은 E과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함이 없이 바로 위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이 피

고에 대하여 원고가 송금한 25,425,51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예금채권 부분

을 제4,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8. 당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예금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순번 | 종류 | 개설일 | 만기일 | 금액(원) |
|----|--------|---------------|---------------|-----------|
| 1 | 저축예금 | 2012. 4. 30. | 2012. 4. 30. | 100 |
| 2 | 기업자유예금 | 2014. 9. 25. | 2014. 10. 22. | 5,500 |
| 3 | 주택청약저축 | 2011. 10. 20. | - | 1,700,000 |
| 4 | 외화보통예금 | 2010. 6. 29. | - | 0 |
| 5 | 퇴직연금신탁 | 2004. 11. 30. | - | 50,968 |
| 합계 | | | | 1,756,568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합계 1,756,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무효 항변

1) 피고는, 위 표 5번 기재 퇴직연금신탁은 E이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위 예금의 권리자는 직원들이므로, 위 퇴직연금신탁채권의 권리자가 E임을 전제로 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

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 711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표 5번 기재 퇴직연금신탁은 E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들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또한, 설사 위 표 5번 기재 퇴직연금신탁이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연금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상계 항변

1) 피고는, E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예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25,425,510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E의 대출금은 96,765,658원이어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96,765,658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7,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다른 채권자인 F 명의의 가압류결정이 2014. 9. 5. 피고에게 발송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제2조 제2항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상계통지서가 2014. 12. 19. E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인 E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변제기는 2012. 4. 30. 및 2014. 10. 22.이거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반대채권인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도달하기 이전인 2014. 9. 5.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인 2014. 9. 5.경에는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바, E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 9. 5.경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E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

660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E 역시 위 돈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2014. 9. 30. 전에 E의 다른 채권자인 F에 의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상계항변을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판사 홍주현

 판사 이원재